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1
----------	------

2018. 6.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6.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가. 제안이유

- 2015. 5. 14. 개정 후 조례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시건축 정책 수립과 민간분야와의 상호 협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

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 (2018. 3. 15. ~ 4. 4.)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목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조례제목 수정),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여 서울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1조), 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 대상 확대(안 제9조 및 제1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정비(안 제23조) 및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규정(안 제36조)과 공공건축가 자격요건 등을 정비(안 제37조)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명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건축기본조례 → 건축 기본조례) 하려는 것으로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쓰도록 한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¹⁾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

둘째, 조례 시행목적 확대(안 제1조)

- 현행 조례 제1조에서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시행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사항 외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재8판), p.86

- 추가되는 내용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은 있으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건축정책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셋째, 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9조제3항 신설)

-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업무처리 및 조사결과를 보고하고(제9조제2항),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제3항)²⁾하고 있는데, 그 밖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단장 내부방침³⁾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기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로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의 자문단 설치·운영조항을 근거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공간개선단-15287(2016.11.30.),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주요업무내용〉

제1분과(정책수립)	제2분과(정책실현)
[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시건축 주요정책 검토 및 개선 2. 건축기본법령(조례) 제.개정 3.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4.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행정 개선 5. 서울건축선언 수립.운영 6.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공공사업 설계공모 자문 7. 설계공모 일원화(시장방침 제362호) 관련업무	1.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 2. 서울건축포럼 관련(지원 등) 업무 3. 건축학교 운영관련 사항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 업무 5. MP, 전문위원 등 추천 6. MP 제도 강화 등 사업관리 체계확립 (시장방침 제362호) 관련 업무

(출처: 도시공간개선단-15287(2016.11.30.),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넷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보완(안 제10조)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안 제10조제1항제8호)을 반영하는 사안임.
- 예를들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시·도 건축정책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치도

4)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록 규정하고 있음.5)

- 안 제10조제2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사항에 해당하는 각 호 규정을 “제1호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의 각 목으로 두고,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제2호로 신설해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특히,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대상인 설계발주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주에 관한 사항”을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는데,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공사발주까지 자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다섯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제32조제2항 삭제)

-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없이 운용중인 제32조제2항 의제처리 관련조항을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제시의견6)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의제하는 규정은 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담당관-12680(2016.8.25.),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제출)

위임범위의 일탈 또는 남용소지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붙임 1 참조)에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32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서는 법령상 위임규정 없이 조정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의제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이러한 의제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현행 법령상 건축정책위원회를 조정위원회의 상위 위원회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에 대해 건축정책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다시 필요한지의 여부가 법령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7) 법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여섯째, 포럼의 지원 확대(안 제34조제2항 신설)

- 시장은 「민법」 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건축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하여,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 건축 관련 계획 또는 정책평가·제안,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이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조례 제33조, 붙임1 참조)토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럼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조례 제34조, 붙임1 참조)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비용지원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포럼이 조례 제33조제4항8)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보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이 예산지원 외에 기타 행정지원 등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지원내용 및 범위,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포럼 주요활동 별첨 2참조)

8)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3조(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④ 포럼은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
2. 시의 건축 관련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등 홍보
4.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일곱째,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규정 개정(안 제36조 및 제37조)

-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법 제23조제1항⁹⁾ 및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¹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며, 임기는 2년임.
-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36조제1항의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근거규정(시행령 제21조)을 삭제하여 서울시 자체 기준에 부합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가능토록 하고, 아울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건축사 등도 ‘공공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¹¹⁾ 제37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는 건축사·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시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나,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협회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9)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10)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1)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붙임 1 참조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p> <p>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시 -----</p> <p>-----</p> <p>-----</p> <p>-----</p> <p>-----</p> <p>-----</p> <p>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서울지역 -----</p> <p>-----</p> <p>-----</p> <p>-----</p> <p>-----</p> <p>-----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p> <p>1. 영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p> <p>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p>

- 법령상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위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상위법령 적합여부, 기존 민간전문가의 서울시정 기여정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요건 완화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안 제36조제2항 및 안제37조제2항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연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서울시 건축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¹²⁾.

12) 2016년말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16.11.17)에서 총괄건축가의 임기(2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만, 연임횟수 내지 연임가능기간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¹³⁾에서 6년 이하로 제한되는 상황인바 총 2차례까지만 연임이 가능할 것임.

- 안 제36조제3항은 현재 서울시 내부 방침¹⁴⁾에서 정하고 있는 총괄 건축가 자문대상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행 5년차를 맞아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괄건축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총괄건축가 자문대상사업은 서울시 내부방침에 따라 '16년 3월 최초 정해진 이래 '16년 11월 1차례 수정¹⁵⁾되었으며, 이중 도시·건축관련 문화행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사업은 금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되었음.

13)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14)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2016.3.10.),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

시장 방침 제362호(2016.11.16.),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무 일원화 추진계획

15) 총사업비 또는 설계용역비가 기준(총사업비 100억, 설계용역비 20억원)에 미달하는 사업 중 서울시 도시·건축정책에 중요한 용도 및 시설유형 3가지를 자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수정되었으며, 이는 안 제36조제3항제2호 단서규정에 반영되었음.

〈총괄건축가 자문대상사업〉

행정2부시장 방침 (2016.3.10)	시장 방침 (2016.11.16)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공간환경사업 (건축정책위원회 자문대상사업 등) ◦ 설계용역비 2억원이상의 공간환경사업(기술심사 대상사업) ◦ 도시 건축관련 문화사업(건축문화제, UIA 등)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 도시·건축 관련 문화행사 사업(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UIA 등) ◦ 총사업비 또는 설계용역비가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에 중요한 용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안 제36조제3항제2호) ◦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36조제3항제2호 단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 끝으로, 공공건축가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설계참여·자문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공건축가의 역할 증진을 통해 공공건축물 사업¹⁶⁾의 공익성 및 대시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항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운영실적을 면밀 검토하여 제

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교육청 협업 사업 등

도개선 효과를 검증하되, 이에 덧붙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건축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③ _____. 1. _____ 기획 설계 또는 공공 건축물의 -- 설계-----

여덟째,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 개정(안 제39조제3항)

-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해당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촉된 자로서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므로 관계 부서 공무원과의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한 바,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확보한다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 이 개정조례안은 그간 건축기본조례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의 시행목적을 확대하고, 서울시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적 보완 및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 자격요건 및 연임 규정을 개선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건축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내용상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시정에 활용함에 있어 점차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사업의 지연이나 민원야기 등이 우려될 수 있는 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부조문의 경우 수정·보완하여 조례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1
----------	---------

제안일자 : 2018. 6. 1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규정을 개선하고 업무원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을 건축기본법 시행령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하고(안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업무원칙은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9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6조제1항 중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으로 한다.

안 제37조제1항 중 “서울지역”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39조제3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이하 "서울총괄 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u>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u> -----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u>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u>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u>서울지역</u> -----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u>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는 전문가(이하 "공공 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 ----- ----- ----- -----</p>	<p>----- ----- ----- ----- ----- -----</p>
<p>〈신 설〉</p>	<p>1. <u>영 제21조제1항에</u> <u>해당하는 사람</u></p>	<p>〈삭 제〉</p>
<p>〈신 설〉</p>	<p>2. 「<u>건축사법 시행규칙</u> <u>」 제12조의2에 따라</u> <u>국토교통부장관에게</u> <u>신고한 사람</u></p>	<p>〈삭 제〉</p>
<p>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 ② (생략)</p>	<p>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③ <u>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u></p>	<p>③ <u>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u></p>	<p>〈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를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적공간”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 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조례”로, “위원회 또는”을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으로,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제37조제1항 중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설계참여 또는”을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로, “설계업무”를 “설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空地: 공터)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空地: 공터)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 ----- ----- <u>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u> -----.</p> <p>제2조(정의) ----- -----.</p> <p>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p>

③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 1. ~ 6. (생략)

<신설>

② 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

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 다음 -----

-----.

-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

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

·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외한다.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
항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서울
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운
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
성) ① (생략)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
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4조(포럼의 지원) (생략)

<신 설>

<삭 제>

제22조(수당 등) -----

----- 별
위-----
-----.

제23조(운영세칙) -- 조례-----

----- 위원회, 소위원회, 분
과위원회 또는 -- 구성·운영---

-----.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
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포럼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②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1. (현행과 같음)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3. ~ 7. (생략)

④ ~ ⑦ (생략)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설 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설 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관련 건설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 4. (생략)

④ (생략)

-----.

② -----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

1. -----
--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
의 -- 설계-----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